

## 충청북도바이오농업·농기업육성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
제출년월일 : 2003. 4. 21

제 출 자 : 정 윤 숙 의원

### 1. 수정이유
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삽입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골자

안 제10조 다음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삽입함.

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안 제11조, 제12조, 제13조는 각각 제12조, 제13조, 제14조로 한다.

## 충청북도바이오농업·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바이오농업·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 다음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및 여비)를 제12조(수당 및 여비)로 한다.

제12조(포상 등)를 제13조(포상 등)로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를 제14조(시행규칙)로 한다.